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사복지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방부에 군 내 감염병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사복지실장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감염병대응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방부령 제 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2(제18조의2 및 같은 조)를 삭제한다.

별표 5의2를 삭제한다.

국방부령 제1102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4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6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u> <u>제18조의2(평가대상 조직) 「국방</u> <u>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u> <u>조의2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u> <u>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의2와</u> <u>같다.</u> 국방부령 제1102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감염병대응팀은 <u>20</u> <u>25년 12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② (생 략)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 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u>2025년</u> <u>12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u><삭 제></u> <u><삭 제></u> 국방부령 제1102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 ----- <u>20</u> <u>27년 12월 31일</u>-----.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 ----- ----- <u>2027년 1</u> <u>2월 31일</u>-----.